

대구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가합20203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나다
담당변호사 송승우
변 론 종 결 2024. 8. 29.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과 피고 사이에 2022. 9.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5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은행'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순번	신용보증계약 체결일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대출금(원)
1	2015. 9. 16.	270,000,000 (변경: 255,000,000)	2015. 9. 16. ~ 2016. 2. 26. (변경: 2023. 2. 17.)	300,000,000
2	2015. 9. 16.	170,000,000 (변경: 160,000,000)	2015. 9. 16. ~ 2016. 9. 13. (변경: 2023. 3. 7.)	200,000,000
3	2020. 8. 31.	160,000,000	2020. 8. 31. ~ 2021. 8. 30. (변경: 2023. 2. 27.)	200,000,000

2) 당시 C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였던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B의 별지 기재 부동산 증여

B은 2022. 9. 13. 배우자인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D은행은 2022. 12. 17. C의 대출금 연체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로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자 2023. 1. 11.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원고는 2023. 3. 31. D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587,174,709원(= 1번 대출금 원금 255,000,000원 + 1번 대출금 이자 5,430,382원 + 2번 대출금 원금 160,000,000원 + 2번 대출금 이자 3,185,183원 + 3번 대출금 원금 160,000,000원 + 3번 대출금 이자 3,559,144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22. 9. 13.에는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당시에 이미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2022. 12. 17.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③ C은 2019년 48,338,039원, 2020년 14,128,556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2021년 528,508,973원, 2022년 351,663,638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1) 관련법리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를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참조).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참조).

2) 판단

가) 적극재산

(1) 이 사건 부동산 : 820,000,000원 (인정)

갑 제8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23. 5. 13. 기준 가액은 약 82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2. 9. 13. 기준 가액도 위와 같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82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적극재산에 포함된다.

(2) 고령군 E 전 602㎡ : 9,571,800원 (인정)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은 시가 9,571,800원 상당의 고령군 E 전 602㎡를 소유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B의 적극재산에 포함된다.

(3) C에 대한 가수금채권 : 554,500,000원 (부정)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이 보유하던 C에 대한 554,500,000원 상당의 가수금채권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은 C에 대해 554,500,000원의 가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B은 C으로부터 2022. 10. 7. 100,000,000원, 100,000,000원, 2022. 10. 24. 80,000,000원, 90,000,000원, 80,000,000원, 2022. 10. 25. 100,000,000원, 54,500,000원, 합계 604,500,000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인정되어야 적극재산에 포함되는데,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은행에 대한 2023. 12. 20.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22. 9. 30. 기준 C의 총 주식 71,000주 중 28,889주는 B의 아버지인 F가, 21,111주는 B이, 7,000주는 B의 배우자인 피고가 각 보유하고 있고, B은 2014. 3. 3.부터 2017. 3. 3.까지 C의 대표이사로, 2020. 1. 2.부터는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B의 아버지인 F는 2020. 1. 2.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등 C은 B와 그 가족들이 소유·경영하는 회사인 점, ② 피고는, B이 C으로부터 위 가수금채권 변제 명목으로 604,500,000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위 가수금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위 604,500,000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 직후 송금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B이 위 604,500,000원을 송금 받은 계좌에서 2022. 10. 7. 77,000,000원, 2022. 10. 8. 73,000,000원, 2022. 10. 24. 65,000,000원, 75,000,000원, 60,000,000원, 2022. 10. 26. 211,110,000원이 각 출금되어 송금 즉시 또는 그와 근접한 시일 내에 송금된 금원 대부분 출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송금이 진정 가수금채권 변제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③ 앞서 본 것과 같이 C은 2019년, 2020년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2021년, 2022년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22. 12. 7.에는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B의 C에 대한 가수금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인정되는 채권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가수금채권은 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4) C 비상장주식 21,111주 : 250,000,000원 (부정)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이 보유하던 약 250,000,000원 상당의 C 비상장주식 21,111주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은 2022. 9. 30. 기준 C의 비상장주식 총 71,000주 중 21,111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당시 위 주식 1주당 가치가 11,961원으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용이하지 않은 점, ② 앞서 본 것과 같이 C은 2021년, 2022년 모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2022. 12. 7.에는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③ 위 주식 가치 평가 내용이 기재된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는 B의 의뢰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B이 보유한 C 주식의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비상장주식도 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소극재산

(1) 이 사건 구상금채무 : 587,174,709원 (인정)

(2) D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 295,000,000원 (인정)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D은행에 대한 2023. 12. 29.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G은행, 채권최고액 35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95,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295,000,000원은 B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3) D은행에 대한 가계일반자금 대출금채무 : 25,668,993원 (부분 인정)이 법원의 D은행에 대한 2023. 12. 20.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이 2011. 9. 8. D은행에 개설한 마이너스통장의 대출금채무가 25,668,993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B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이 법원의 D은행에 대한 2023. 12. 29.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B은 2017. 11. 9. D은행으로부터 1,000,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는 2017. 11. 9. 위 대출에 관하여 대구 달서구 H 대 1080.6㎡에 대하여 D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주식회사 I에게 2022. 9. 29. 위 토지를 매각하고 2022. 10. 24.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위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대출금 채무 전액에 대하여 D은행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1,00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는 B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J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 49,444,146원 (인정)

을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B은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J에 대한 차량 리스료채무를 보증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리스료채무 잔액은 합계 49,444,146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한 리스료채무 잔액 31,564,247원(= 2022. 12. 18. 기준 수납후잔존원리금 63,741,177원 - 2022.

12. 18. 기준 보증금잔액 39,340,000원 + 2022. 12. 5.자 리스료 2,387,690원 + 2022. 11. 5.자 리스료 2,387,690원 + 2022. 10. 5.자 리스료 2,387,690원) +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대한 리스료채무 잔액 17,879,899원(= 2022. 12. 18. 기준 수납후잔존원리금 36,150,099원 - 2022. 12. 18. 기준 보증금잔액 22,328,000원 + 2022. 12. 5.자 리스료 1,352,600원 + 2022. 11. 5.자 리스료 1,352,600원 + 2022. 10. 5.자 리스료 1,352,6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49,444,146원의 보증채무는 B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K의 자력이 충분하므로 위 보증채무는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K의 자력이 충분하다거나 위 리스료채무 전액에 대해 채권자인 J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L조합에 대한 근보증채무 : 715,000,000원 (부정)

원고는 B의 L조합에 대한 715,000,000원의 근보증채무가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L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B은 2021. 1. 6. L조합과 사이에 K가 L조합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를 715,000,000원으로 하는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K가 2021. 12. 17. L조합으로부터 1,2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K는 2021. 12. 17. 위 대출에 관하여 대구 수성구 M 대 301.5㎡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L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32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위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2021. 12. 10. 기준 1,630,449,570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대출금 채무 전액에 대하여 L조합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715,000,000원의 근보증채무는 B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N에 대한 구상금채무 : 81,495,000원 (부정)

원고는 B의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에 대한 81,495,000원의 근보증채무가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N이 C과 체결한 보증보험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2023. 8. 22. 보증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81,495,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약정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 한 B에 대해 위 금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구상금채무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구상금채무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구상금채무는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127,716,048원 초과)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B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순번	적극재산		소극재산	
1	이 사건 부동산	820,000,000원	이 사건 구상금채무	587,174,709원
2	고령군 E 전 602㎡	9,571,800원	D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95,000,000원
3			D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5,668,993원
4			J에 대한 보증채무	49,444,146원
합계		829,571,800원		957,287,848

다.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1) 관련법리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는 채무초과상태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점, ③ B는 C의 사내이사이자 주주로서 C의 재정 상태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B의 사해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그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이 B의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인 점, 피고는 B의 배우자이자 C의 주주로서 C과 B의 재정 상태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관련법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5, 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은행에 대한 2023. 12. 29.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22. 9. 21. 해지를 이유로 말소된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95,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2024. 5.경 가액은 825,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도 위와 같을 것으로 추인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825,000,0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95,000,000원을 공제하면 530,000,000원이고, 이는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587,174,709원보다 적으므로, 위 5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5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경희, 판사 정소영, 판사 이호선

별지